

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00 - 1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0. 4. .
제안자 : 거창군수

폐지이유

- 본 조례의 모법인 생활보호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생활보호 기금의 적립은 『도』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
(‘98. 7. 28개정)
-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의 종류별로 산출한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명시
- 보호비용은 국·도비 및 자체예산을 생활보호법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, 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나 기금을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임

주요골자

- “생활보호기금”은 도이상의 자치단체에 설치토록되어 있으므로
- 현행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 폐지

폐지근거

- 생활보호법시행령제29조제1항

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